배 당 요 구 신 청

사건번호
채 권 자
채 무 자
배당요구채권자
　　ㅇ시 ◯구 ◯동 ◯번지
배당요구채권
1. 금　　원정
　ㅇ ㅇ 법원　　가단(합) ㅇ ㅇ호 ◯ ◯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 금　　원의 변제금
1. 위 원금에 대한　　년 ◯ 월 ◯ 일 이후 완제일까지 연 ◯ 푼의 지연손해금

신　청　원　인

위 채권자 채무자 간의 귀원　　타경 ◯ ◯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전기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경매매득금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위 배당요구채권자　　(인)

연락처(☎)

지방법원　　귀중

☞유의사항
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,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 가압류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할 수 있으며,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.